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2021년 8월 9일 월요일 오후 2시

**온라인 토론회** You Tube 박주민TV, 노동이수진TV

주최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문의 박주민 의원실(02-784-8690), 이수진 의원실(비례, 02-784-6351)

**사회** 권오성 교수 성신여대 법학부

**발제** 1. 경영책임자의 의무 범위

- 손익찬 변호사 민변 노동위 노동자건강권팀장

2. 중대재해의 정의: 직업성 질환

- 이진우 전문의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토론** 김재윤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형렬 교수 가톨릭의대 직업환경의학교실

이병훈 교수 중앙대 사회학과

# 목 차

---

발제 1. 경영책임자의 의무 범위		
- 손익찬 변호사 민변 노동위 노동자건강권팀장	.....	1
발제 2. 중대재해의 정의 : 직업성 질환		
- 이진우 전문의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 사회	.....	12
토론 1. 김재윤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28
토론 2. 김형렬 교수 가톨릭의대 직업환경의학교실	.....	37
토론 3. 이병훈 교수 중앙대 사회학과	.....	40

---

발제 1. 경영책임자의 의무 범위 - 손익찬 변호사 민변 노동위 노동자건강권팀장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상 경영책임자의 의무 범위**  
- 시행령 제정안 제4조, 제5조에 관한 비판적 검토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자건강권팀장 손익찬 변호사

- \* 다수가 참여한 논의를 정리함(잠정)
- \*\* 최종 성안된 내용은 별도로 정부에 제출될 예정

일과사랑

**1. 논의의 대상 - 법 제4조의 구체화(시행령 제4조, 제5조)**

## 1. 논의의 대상 – 참조 : <10만인 발의안 : 대표발의자 김미숙>

**제3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①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한다. 이하 같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거나 발주한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위험방지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제51조, 제58조제1항, 제59조 제1항, 제60조, 제63조, 제64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65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제2항, 제8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 제1항 : 사업주등이 사업으로 인하여 '이윤'을 거두는 만큼, 그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에 관해서도 '포괄적인 의무'(=위험방지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취지임 (단순히 개별법상 의무가 아님)

□ 제2항 : 포괄적인 위험방지의무에 관한 '예시'조항

□ 영국 산안법 제2조 (1) "It shall be **the duty of every employer to ensure,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the health, safety and welfare at work of all his employees.**"

3

## 1. 논의의 대상 : 현행법 제4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호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 이행하라는 포괄적인 조항으로 이해됨 (의무내용이 실정법으로 한정되지 않음)

> **시행령 제정안 제4조로 구체화**

□ 제4호는 <실정법 중에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사업주 등이 취하라는 내용으로 이해됨 > **시행령 제정안 제5조로 구체화**

4



## 1. 문제의 핵심 : 수권법률상 규율대상, 목적의 범위를 임의로 축소

시행령 제정안 제4조에서 현행법 제4조제1항제1호(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 단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만으로 위임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수권법률이 수권한 규율대상과 목적의 범위를 임의로 축소하는 것으로 위임명령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시행령 제정안 제5조에서 현행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 단지 점검 지시 및 결과 보고, 그리고 보고 범위 내에서의 관리 의무로 위임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수권법률이 수권한 규율대상과 목적의 범위를 임의로 축소하는 것으로 위임명령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5

## 2. 시행령 제4조 검토 (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구체화)

6

## 2. 시행령에서의 인용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한 문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검토의견 : 법률에서 명시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부분을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마치 법률 조항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에 관한 조항인 것처럼 왜곡하였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범위 이상을 정부에서 구체화하면 위헌인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위헌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시행령에서는 법률 전체의 내용을 인용해야 한다.

법에서 시행령에 구체화를 명한 대상은 인적(인력), 물적(예산), 시스템(안전보건관리체계)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시행령제정안은 “안전보건관리체계”만으로 구체화 대상을 협소하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인적/물적 조치가 아닌, 단지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와 관련된 조치만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다.

7

## 2. 제1호에 관하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1. 사업 및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 검토의견 : 이 부분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과 경영목표를 수립하라는 산안법 제14조와 내용적으로 큰 차이점이 없다고 보인다. 다만 산안법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위 의무를 지우는 것과는 달리 본 시행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한 모든 사업주에게 의무를 지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내용을 보다 명확히 정하기 위하여, 제1호를 “**사업 및 각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편성 등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8

## 2. 제2호에 관하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2.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업무장소 및 작업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로 갈음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제2호 본문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라는 것으로 그 내용 자체는 타당하다고 보인다.

산안법 제36조에서도 제2호와 유사하게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서 개선하라는 ‘위험성 평가’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제2호의 의무이행을, 산안법상 위험성평가의 실시로써 갈음하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규정한다면, 재판에서 경영책임자 등이 제2호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라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는지 여부만을 따지게 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시행령 제정안 제2호 중에서 괄호 안의 내용만큼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9

## 2. 제3호에 관하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3. 각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을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라 지정된 자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업종 및 규모를 고려하여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할 것  
나. 가목에 따라 배치하는 전문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시간을 보장할 것

□ 검토의견 : 제3호는 내용자체만 놓고보면 틀린 것은 없지만, 형벌조항임을 감안한다면, 산안법상 사업주가 당연히 배치해야 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그 자체로 면죄부를 줄 위험이 큰 조항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이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수립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예산’의 확보 수준으로 모법의 위임 범위를 격하시켰다. 본 조항은 시행령 본문이 보이고 있는 법률에 대한 협소한 이해를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조항이라고 하겠다.

10



## 2. 제4호에 관하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4.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

□ 검토의견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의 명문에 규정된 내용을 존중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이루기에 적절한 인력과 시설 및 장비” 또는 “재해예방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그럼으로써 단지 현행법상 갖춰야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전문가 인력)이 나 시설, 장비만 갖추는 것이 의무내용의 전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2인 1조 시행 등) 등을 갖추어야 하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산안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정부의 책무) :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임

11

## 2. 제5호에 관하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5.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것. 다만, 제3호 가목에 따라 각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합이 3명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검토의견 : 안전보건에 관한 전담조직은 이미 산안법에서 시행령 제정안 제5호보다 더 넓은 범위(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회사,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에서 예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정안 제5호는 산안법보다 오히려 그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안전보건에 관한 전담조직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고 의미있는 일이다. 다만, 전담조직이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이 조항은 전담조직을 둬으로써 최선을 다했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활용되기에 좋은 조항이어서, 근본적으로 존재이유가 의문시된다.

개별법상에 의무조항을 둘 의도라면 해당 법에 두는 것이 타당하지, 처벌법에서 구체적인 의무조항을 두는 것은 체계에도 맞지 않고 면책을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될 위험이 크다.

12



## 2. 제6호에 관하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6.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및 개선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반기 1회 이상 청취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 이 경우 의견청취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64조 및 제75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협의체를 통한 논의 및 심의·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종사자에 대한 의견 청취”가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조치 의무를 지우는 것은 한계가 명백하다. 경영책임자 등이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되, 의견을 청취할 당시에 재해예방에 불 필요하다고 여겨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더라도 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반기 1회 이상” - 해석되기에 따라서 양날의 칼일 수 있다.

**특히 제6호 제2문(“~갈음할 수 있다”라고 정한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제6호 제2문은 단지 산안법 제24조, 제64조, 제75조에 따른 위원회, 협의체의 논의, 심의, 의결을 형식적으로 한다면 면죄부를 주는 방식이어서 제2호에 대한 평가와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애초에 갈음의 대상으로 정해진 산안법 제24조, 제64조, 제75조의 협의체도, 종사자들의 의견청취가 제대로 되지 않고 형식적이라는 비판도 상당함

13

## 2. 제7호에 관하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7. 사업 또는 각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대피, 보고,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절차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및 발생보고 등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할 것

□ 검토의견 : 해당 조항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기 발생한 재해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반기 1회 이상 확인 점검을 하기만 하면, 책임을 다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반기 1회 이상” 등의 구체적인 횟수가 담긴 수식어는 재고가 필요하다.**

14

## 2. 제8호에 관하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8.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것  
 가.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  
 나.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적절한 안전 및 보건 관리 비용과 수행기간

□ 검토의견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가장 상위의 도급인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 단계를 가리지 않고, 수급인의 종사자를 위하여 제4조의 의무를 진다고 정한다. 또 산안법 제63조도 마찬가지로 가장 상위의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하도급 단계를 가리지 않고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진다고 정한다.

그럼에도 이렇게 조항을 만들면, 도급인 등이 제8호 가, 나목의 의무를 하기만 하면,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해당 내용은 이미 산안법에도 있지만 현장에서 적용이 잘 안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차라리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15

## 2. 개선방안 [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4조(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사업 및 각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등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제1호 표현 수정>
2.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업무장소 및 작업 특성에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의 마련 및 이행상황의 점검 <제2호 괄호안 삭제>
3. 종사자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의 배정, 시설 및 장비 등의 구비와 개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 등을 계획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관리체계의 마련 및 시행(위 관리체계에는 각 단위의 종사자 대표가 참여토록 함)  
 <제4호를 법률의 취지에 맞게 수정>
4.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대피, 보고,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절차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및 발생보고 등의 절차 마련 및 이행상황의 점검 <제7호 표현 수정>

16

### 3. 시행령 제5조 검토 (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구체화)

17

### 3. 제1항에 관하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제5조(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을 말한다.

□ 검토의견 : 법률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라고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이라고 언급한 것은 동어반복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자료를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본”으로 하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으로 이해하여야 함”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보다 명확히 하려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의무조항을 두고 있는 법령을 말한다”라고 정할 필요가 있다.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가 형사처벌, 행정처분, 혹은 아무런 제재조항이 없는 경우와 무관하게, 의무를 지우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18



### 3.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관하여 (1/4) – 총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5조(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반기별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것.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
2. 제1호의 보고를 받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검토의견 :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반기별 1회 이상의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으며(제1호) 보고받은 결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제2호)라고 설명함으로써 ‘**점검-보고-조치**’의무를 하나의 체계로 설명한다.

19

### 3.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관하여 (2/4)

□ 검토의견(계속) 시행령 제정안 제5조제2항은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모든 관리상의 조치**’가 아니라, ‘반기별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지시를 하고 그 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제1호), (보고 받은 내용 중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그 의무이행을 위한 인력배치, 예산 추가 편성 등 필요한 조치(제2호)’를 취할 의무로 대체하고 있다.

**즉, ‘법령상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무를 ‘점검 보고 사항 중 미 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의무로 그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이는 수권법률의 수권범위를 명백하게 왜곡한 것으로 위법하다.**

게다가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을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법령상의 의무이행에 대한 면책 조항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제1호 제2문에서 “위탁”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부분은 삭제가 필요하다.**

(실질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점검’에 관한 위탁이 가능하다고 정할 경우, 사업주가 스스로 노력을 기울여서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보다는 돈을 주고 외부에 맡기는 손쉬운 방법만으로 도피할 위험이 있다. 이 경우 외주업체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돈을 주는 사업주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점검할 위험도 있다.)<sup>20</sup>



### 3.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관하여 (3/4)

□ 검토의견(계속) 또한 제2호는 “제1호의 보고를 받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 (중략) ...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정해져 있다.

즉 제1호의 점검과 보고를 받은 내용에 ‘한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이러한 구조라면 외주업체가 ‘법 위반 사항이 없다(이미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고 있다)’라고 부실하게 점검하여 보고하였고 경영책임자 등이 그 결과만 믿고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법령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경영책임자 등은 자신은 보고받은 대로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항변할 여지가 있다.

또한, 매년 반기별 보고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단지 1년에 두 번의 보고와 지시로 면책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발제 2. 중대재해의 정의 : 직업성 질환

이진우 전문의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에 관한 국회토론회 중대재해의 정의 : 직업성 질환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이진우

연구보고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직업성 질병의 범위

구경완·김형철·강동욱·류현철·이진우·윤간우·박승권·전  
형배·손익찬·송지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직업성 질병의 범위’  
연구에서의 논의

##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공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9.] [고용노동부령 제308호, 2021. 1.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 2호 중대산업재해

- 질병과 부상: 산업법보다 규율대상이 범위가 좁음

## 주요 연구 내용

### • 주요 쟁점

- 시행령은 제정 법에 종속되는 특성이 있지만 문구적 해석에만 머물지 않고 법률 제정의 취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 제정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중대성 규정으로 한정하여 질병목록을 모두 포함할지, 일부 기준에 의해 질병목록을 제한할지 여부

### • 시행령안

- 제정 법 제4조에 의해 사업주 의무 위반과 이로 인한 제 2조 2호에서 규정하는 질병이 처벌이 가능한지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 제 2조에서 대상 질병 한정 불필요하다는 안
- 인과관계 규명이 명확하고, 사업주에 의해 예방이 가능하고, 중한 질병에 한정하여 대상 질병을 정해야 한다는 안

## 제정법률 제2조 제2호에 대한 해석 1

- 제2조 제2호는 사고, 혹은 질병발생의 중함(중대성)을 규정하는 내용임.
  - 가목은 사망이 발생한 경우
  - 나목은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일한 사고로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다목은 **질병에 대해서 가목과 나목에 해당할 만한 중대성을 표현해 시행령으로 정하라는 의미**
-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중한 재해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4조에 의한 판단
  - 제4조에 의한 영향은 독립적으로 **중대성에 기반한 질병목록을 정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함**
- 제2조 제2호 가목의 사망은 사고 뿐 아니라 질병에 의한 사망을 포함하고 있음
  - 나목 : 제2조 제2호 가목의 사망에 견줄만한 부상에 의한 재해
    - 원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 중대성의 정도를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것"과 "동일한 사고" "2명 이상" 발생으로 규정
  - 다목 : 질병에 의한 재해, 구체적인 다목의 내용을 시행령에 기술하도록 한 것
    - 이를 고려하면 질병 역시 원인이나 관리방안 등을 고려하는 규정이 아니라 중대성을 규정하면 됨
- 따라서
  - 법적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에 근거하여 목록화를 시행
  - 사망에 이르지 않은 질환의 중대성을, 혹은 각 질환의 중증도만을 규정하면 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공이용시설 또는 공공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제정법률 제2조 제2호에 대한 해석 2

- 제2조 제2호의 다목에서 각 질환별 요양기간 등의 중증도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
  - 다목 키워드 : "동일한 요인", "급성중독 등", "1년에 3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요인"
      - 동일한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은 동일 사업장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동시성, 혹은 다발성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
    - "1년에 3명 이상 발생"
      - 1, 2명 발생한 것을 중대재해로 다루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 부분에서 이미 질환의 중대성을 다루고 있음.
  - 별도로 요양기간, 장애등급 등 질병의 중함을 다루어야 할 취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 동일요인이라는 규정과 1년 3명 이상 발생이라는 규정을 통해 직업병의 중대성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직업병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하는 것의 의미
    - 부상과 다른 질병의 특성을 고려한 목록화를 하라는 것으로 해석
    - 법률 제정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졌다고 보기 힘들.
  - 중대시민재해에서 질병에 대해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으로 정의
    - 중대시민재해와 동일하게 요양기간(치료가 기간)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
  - 질병별 중증도를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고, 포함하지 않는 것도 법률 해석상 가능
    -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내 3명이상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병이 발생하는 경우만으로 중대성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



## 제정법률 제2조 제2호에 대한 해석 4

-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목록을 제한해야 한다는 해석
  - 제2조 제2호에서 모든 직업병을 목록화 할 경우 우려지점
    - 오로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규정의 해석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처벌여부가 결정됨
    - 목록화된 특정 질병만이라도 반드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 되지 못하고
    - 산안법에서처럼 사고사망과 중독 중심으로만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 높음
  - 목록 제한의 근거
    - 사고사망, 급성중독외에도
      -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 상한을 초과하여 발생한 뇌혈관 심장질환
      - 직장내괴롭힘 등에 의해 발생한 정신질환
      - 비교적 인과관계 규명이 가능한 석면, 결정형유리규산, 벤젠 노출 등에 의해 발생한 직업성 암
      - 과도한 유기용제 노출에 의해 발생한 만성유기용제 중독 등
    - 질병이 중하고, 인과성 규명이 일정하게 가능한 질환을 명시하여
      - 목록에 있는 질환을 보다 실효성 있게 법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하자는 의견
    - 그러나 어떤 질환을 배제하고, 어떤 질환을 포함할지 기준이 임의적임

## 해외사례 검토

- 영국, 호주 빅토리아주, 미국, 캐나다 온타리오주 등
  - 산안법 위반에 따른 결과가 질병이라는 이유로 법집행에서 배제되고 있지 않음

## 연구진 합의 지점

- 이 법의 취지
  - 과중한 처벌을 통해 반복되는 산재사망과 이에 준하는 중증재해를 줄이는 것
- 이법의구조
  - 제2조에서 이 법의 대상이 되는 재해를 정의
  - 제4조에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
  - 제4조에서 정한 의무위반에 의해 제2조의 대상 질병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직업성 질환의 정함에 있어 원칙
  - 이 법에서 다루는 대상 재해는 중대성이 있어야 함
  - 형사법적인 성격을 갖는 법의 특성상 인과관계 규명이 비교적 명확한 재해가 대상임
  - 사업주가 예방의 노력을 통해 재해 발생을 줄일 수 있어야 함

## 연구진 합의 지점

- 직업성 질환의 정함에 있어 판단
  - 제4조의 판단에 따라 처벌의 기준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 제2조의 대상 재해를 너무 협소하게 정하면,
    - 중대하고,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고, 예방가능성이 있는 재해를 누락시킬 위험
    - 다른 한편으로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기 현저히 어려운 재해나, 인과규명이 어떤 경우에도 어렵다고 판단되는 재해는 중대재해 정의에서 제외 가능성 있음
  - 제4조의 판단이 있다는 점에서 제외의 폭이 넓기는 어려움
- 판단논리
  - 재해 대상 질병을 최대한 늘리려는 논리
    - 어떠한 질병에서도 인과규명이 가능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질병자체를 이 법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
  - 재해 대상 질병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
    - 질병 자체의 중대성의 한계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형사법적 성격을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질환군으로 한정하자는 것

## 시행령안 제안

## 시행령안 제안

	직업병 목록 제한 (-)	직업병 목록 제한 (+)
중대성에 질병중증도 포함 (+)	1안	2안
중대성에 질병중증도 포함 (-)	1-1안	2-1안

## 1안. 가목의 사망 1인에 준하는 질병의 중대성을 규정

- 제○조(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자)
  - 1. 법 제2조제2호제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다음 가목과 나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제1호의 직업성 질병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제시한 별표 3에 해당하는 업무상 질병
    - 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7조(장해등급 결정)의 별표 6에서 제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발생한 경우
  - 2. 법 제2조제2호제다목에서 “1년 이내 발생”은 재해발생일(진단일)을 기준으로 한다.

## 2안. 직업병 목록을 제한, 질병별 중증도 제시

- 제○조(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자)
  - 1. 법 제2조제2호제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다음 가목과 나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제1호의 직업성 질병자는 별표 1에 해당하는 업무상 질병
    - 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요양이 발생하였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7조(장해등급 결정)의 별표 6에서 제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발생한 경우
  - 2. 법 제2조제2호제다목에서 “1년 이내 발생”은 재해발생일(진단일)을 기준으로 한다.



## 2안. 직업병 목록을 제한, 질병별 중증도 제시

<표 > 중대재해처벌대상 직업성 질병을 정하는데 있어 고려한 5가지 기준

기준	내용
1) 업무와 인과관계 파악 가능	- 유해요인 노출과 질병발생간에 잠복기가 짧은 경우 - 단일요인으로 초래된 질병이 아니거나, 잠복기가 긴 질병이라도 원인의 정량적 평가가 가능해 유해요인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2)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 산안법 등에 명시	-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산안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3) 법상 의무 이행으로 사업주의 질병 예방 가능	- 산안법 등에 명시된 조치 의무 이행으로 질병 예방이 가능한 경우
4) 질병으로 인한 신체 피해의 심각성	-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경우
5) 사회적 관심이 높은 중대질병	- 1)~4) 조건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사회적 관심이 높아 사업주 처벌을 통해 질병 예방이 필요한 경우

## 중대재직업성 질병 목록

별표 1 : 중대재해처벌 대상 직업성 질병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뇌혈관질환(腦血管疾患)</li> <li>지주막하출혈(蛛網膜下出血)</li> <li>뇌경색</li> <li>심근경색증</li> <li>해리성 대동맥자루</li> <li>기타</li> </ul>
2. 호흡기계 질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염폐증</li> <li>천식</li> <li>반용성 기도과민증후군</li> <li>과민성 폐기</li> <li>만성폐쇄성폐질환</li> <li>폐렴</li> <li>코사이어 폐양-선종</li> </ul>
4. 신경정신계 질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추신경장애</li> <li>말초신경병증</li> <li>파킨슨증, 근육긴장이상(dystonia) 또는 떨림질환, 다</li> <li>외상후스트레스장애</li> <li>정동장애 또는 우울증 에피소드</li> </ul>
5. 임프조혈기계 질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백혈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li> <li>-&gt;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림프구감소증, 골수형이상증후군, 무혈성(無血性) 빈혈, 골수중식세포증</li> <li>남 또는 그 화상(火傷)유기(有機)는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li> <li>-&gt; 백혈</li> </ul>
6. 피부 질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백반증</li> <li>다형홍반(多形紅斑), 스티븐스-존슨 증후군</li> <li>화학적 화상</li> <li>화상</li> <li>동맥(凍瘡) 또는 동상</li> <li>진리형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li> <li>해급 감염으로 발생한 연조직염</li> </ul>
7. 눈 또는 귀 질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백내장 또는 각막변성</li> <li>망막화상</li> <li>망막박리·출혈·천공 등 기계적 손상</li> <li>각막의출혈 또는 각막내막</li> </ul>
8. 단 질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성 간염</li> <li>화학적 중독요인에 의한 간경변</li> </ul>

9. 감염성 질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연관성 질병</li> <li>결핵, 풍진, 홍역 등 공기전파성 질병</li> <li>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li> <li>렙토스피라증</li> <li>프스카부시증 또는 신중후군 출혈열</li> <li>단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li> <li>말라리아</li> <li>레지오넬라증</li> </ul>
10. 직업성 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암</li> <li>악성종괴증</li> <li>식전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li> <li>부비종(副鼻癌)암</li> <li>피부암</li> <li>방광암</li> <li>비인두암 또는 코인 - 코결막암</li> <li>급성 - 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 - 만성 림프구성백혈병</li> <li>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li> <li>인원관육종 또는 간세포암</li> <li>간암</li> <li>진리형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백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 - 만성 골수성 백혈병</li> </ul>
11.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급성 중독</li> <li>말단뼈 용해(macro-osteolysis), 레이노 현상 또는 피부경화증</li> <li>신부전</li> <li>폐양성 구내염, 구강 질환이나 사구체신염 등 신장 손상 또</li> <li>치아뿌래치근기염</li> <li>세포관상 신장 질병 또는 백연화증</li> <li>급성 세포관괴사, 만성 신부전 또는 전신경화증</li> <li>이화화단소 중독</li> </ul>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압박증</li> <li>결소카리 현상,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li> <li>감염(耳)중수염</li> <li>공기역 현상</li> <li>공기압중, 혈액공기압중, 가슴세포(肺)중독, 심장막 또는 괴하기중</li> <li>산소결핍증</li> <li>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애, 말초신경장애, 운동기능장애</li> <li>급성 방사선증, 핵내장 등 방사선 선 질병, 방사선 폐렴, 무형성 빈혈 등 조혈기 질병, 백 의사 등</li> <li>열사병</li> <li>저체온증</li> </ul>
<p>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인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고, 인과관계(原因), 예방가능, 중대함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질병일 경우 중대재해처벌대상 직업성 질병으로 본다.</p>	

#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에 대한 비판

**Q3** 시행령에서 규정한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뇌심혈관계,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병 등이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는?

법 위반시 처벌이 따르는 만큼 중대 산업계해인자가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함

○ 사고성 제해처럼 특정 질병 유발 요인이 업무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여야 하는 등 인과관계가 명확할 필요

\* 중대산업재해 중 하나인 직업성 질병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 급성중독을 예시로 든 것도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이 질병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하는 경우로 규정

- 산안법 제39조에서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의 범위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함.
- 사망이 아닌 보건조치위반 사례로 질병 발생은 제168조가 규정함. 단순히 보건조치 위반만으로도 벌금형 정도의 처벌이 가능함.
- 이론적으로는 산안법이 보건조치위반에 따른 **직업병 발생을 처벌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또한 처벌되는 직업병의 유형이나 구체적인 종류를 특정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적용상 유연성이 있음.

- -> 기존의 산안법에서도 질병 발생시 39조 위반에 따른 처벌은 가능했으나, **실무선에서 작동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음.
- -> 그간 노동부 업무해태로 처벌하지 않은 것을 질병도 사고처럼 명확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이를 '급성'중독만 목록화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

- 부상 및 중대시민재해의 질병 관련 규정과 규정방식이 상이하고, 법률에서 직업성 질병으로 급성중독을 예시하여 위임한 취지도 고려하여야 함
- 국회 심의과정에서 모든 직업성 질병을 다 포괄하라는 의미로 질병의 범위가 위임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 사고성 재해 방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인 점도 고려함

• 제383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1년1월6일)

- 소위원장 백해련 3축으로 넘어가서 중대산업재해의 개념에서 지금 가· 나목은 이권이 없고요. 중대산업재해 다목에 대해서 또 고용노동부가, 보면 '동일한 원인으로 1년 이내'라는 문구를 넣고 대신에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으로 바꿔 오는 안을 냈어요. 한편 차관님이 얘기해 보세요, 다목.
-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저희가 이런 급성중독 사례가 메탄올, 노말 헥산 그다음에 황화수소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지난번 회의 중에서 박주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명까지 발생하는, 이게 분산되어서 같은 무슨 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 여러 기업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게 분산되다 보니까 한 사업, 한 기업에서 5명까지 발생하는 경우는 사실 저희가 못 찾았습니다.
- 처음에 5명 할 때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알의 요건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 질병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수위는 5명에서 3명 정도로 낮추는 게, 3명 중에서도…… 3명 발생한 사례가 저희들이 좀 찾아보니까 한 할심여 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정한 질병을 한정하면, 저희들이 업무에 둔 질병을 한정하면 한 1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이게 예초에 말씀드렸듯이 직업병 가지고 회사지병한 경우는 드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식스런게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랬다고 전혀 안 되는 처벌할 수 있는 상황으로 법률 규정하는 것은 실용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3명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가 그런 취지입니다.
- 중략—
- 박주민 위원 그런데 고용노동부차관님, 지금 법원행정처 차장님 설명으로 어느 정도 좀 설명은 된 것 같은데, 왜 꼭 3명입니까? 제 법안은 2명이라고 돼 있었는데, 5명이 아니라 3명으로 한 것에 대해서 서론 몇 건 정도가 있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명으로 하면 그것보다 건수가 더 많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2명 이상……
- 박주민 위원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는 2명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2명 이상으로 하면 100여 건…… 뭐 70건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직업병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에 직접 노출된 이런 사고, 노출로 인한 사고의 경우를 하고 그게 축적되는데, 직업병의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회사차별을 전제로 해서 재조사를 하거나 가기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 또한, 뇌심혈관질환 등이 포함될 경우 기저질환 있는 고령층, 가족력 보유자 등 질병발생 가능성이 높은 계층에 대한 비용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 아울러, 처벌과 연계되는 만큼 자칫 뇌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소극적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03. 인정기준 및 판단요령

1. 업무관련성 판단의 원칙

- 뇌심혈관질환은 의학적으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과 같은 기초질환이 서서히 진행·악화되는 자연경과적 변화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과 당사자 주의를 감안할 때 기초질환이 있다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명확하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업무상 부담" 유무를 판단할 때는 발병에 근접한 시기의 사건, 업무 과중성, 장시간에 걸친 피로의 누적, 작업조건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며
- 업무시간을 주요 지표로 하되, 근무인정, 유해한 작업환경에서의 노출,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뇌심혈관질환의 산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매뉴얼'에서
  - 개인적인 요인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명확하다면 인정될 수 있음.
- 재해 인정에 소극적일 것을 우려해서 대상질병목록에서 제거 했다
  - 사회적 합의 결과인 산재인정구조 자체에 대한 부정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모독

- 또한, 뇌심혈관질환 등이 포함될 경우 기저질환 있는 고령층, 가족력 보유자 등 질병발생 가능성이 높은 계층에 대한 채용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 아울러, 처벌과 연계되는 만큼 자칫 뇌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업무상 제해 인정에 소극적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질병발생 가능성이 높은 계층의 고용이 많은 사업장
  - 뇌심혈관계 업무적 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부의 업무임.
- 1년동안 3명이나 뇌심이 발병한 사업장이라면
  - 60시간 이상 노동의 근기법 위반이나 다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
  - 과로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예방방안을 이 법으로 찾지 아니하고, 처벌대상이 될 사업장들이 채용하지 않을 것이 우려된다며 제외시키는 것은 변명일 뿐임
- 뇌혈관심혈관질환은 급성으로도 촉발되는 질환
  - 인과규명 가능한 상황(24시간 이내에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이 있음.
  - 질병군 자체를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함.
  - 질병군에 포함하고, 제4조에 의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

- 이 중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전문가 간담회 등을 수차례 거쳐 **인과관계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 등 중대재해에 포함되는 직업성 질병을 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 동 기준에 따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업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제14호) 등 24가지 질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하였음

- “급성중독 등”은
  - 급성중독과 유사한 발생 특성을 보이는 질병이라는 의미와
  - 급성중독을 반드시 포함하여 목록에 포함하라는 의미가 모두 가능함.
- 국회 법사위에서, 노동부 차관은 직업병으로 조사를 한적이 없어서 급성중독 등으로 좁혀놓고자 했다는 취지의 발언
- 그러나 인과관계의 명확성이 급성과 등치할수 없는 개념임.
  - 급성이 아니더라도 인과관계가 명확한 직업병에 대해서는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음.
  - 따라서, 급성중독은 반드시 포함하고,
  - 인과관계가 명확한 만성중독, 뇌심질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 등은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임



# 노동부 시행령안 문제점

[별표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제2조 관련)	비판 지적
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34조제3항 관련) 중 11.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 급성 중독 12개 항목 그대로
2.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 복부 신통, 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	
3.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한기, 고열, 치조농루, 설사, 단백뇨 등 급성 중독	
4.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과사, 급성 신부전 등 급성 중독	
5.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두통, 현기증, 구역, 구토, 흉부 압박감, 흥분상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중후군, 혼수상태 등 급성 중독	
6. 일시적으로 다량의 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애, 경련, 급성 기질성 뇌중후군, 부정맥 등 급성 중독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청색증, 두근거림, 호흡근관 등의 급성 중독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소실,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 급성 중독	
9. 시안화수소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호흡근관, 두통, 구역, 구토 등 급성 중독	
10. 불화수소·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화학적 화상, 청색증, 호흡근관, 폐수종, 부정맥 등 급성 중독	
11. 인(백린, 황린 등 금지물질)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점막자극 증상, 경련, 폐부종, 중추신경계장해, 자율신경계장해 등 급성 중독	
12.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위장관계 질병	
13. 기타 화학적 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및 별표22에서 규정된 화학적 인자에 한한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별표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제2조 관련)	비판 지점
14.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왜 호흡기 질환 중 기도과민증후군만 포함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34조제3항 관련) 중 '3. 호흡기계 질병'에는 천식, 폐렴 등 급성 성격의 질병도 존재함!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악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은 피부 질병 외에도 다양한 급성질환 <sup>2)</sup> 유발.

1)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화성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yanate),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사. 생략

아. 알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 카. 생략

2) 4. 신경정신계 질병

가. 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hex산·노말hex산·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애. 다만, 외상성 뇌손상, 뇌전증,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동맥경화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증

1) 생략

2)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갈래신경마비.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바이러스 감염,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 바. 생략

사. 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hex산·노말hex산·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제2조 관련)	비판 지점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악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 질병은 제외한다.	
17.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18.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34조제3항 관련) 중 '9. 감염성 질병' 중 일부
19.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냉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다른 감염성 질병 <sup>3)</sup> 이 빠진 근거가 있는가?
20.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 코로나집단감염은?
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압착증,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애, 감염병(집수병), 공기색전증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23.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무형성 빈혈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34조제3항 관련) 중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중 일부
24.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열사병	

- 이외에 급성 직업병 수준에서 본다면 : 화학적 화상 이외에 일반적인 화상 누락, 저체온증 누락

- 목록화하여 제시하였으나, 근거가 부족하고 누락된 직업병도 다수 발견

3)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 바. 생략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환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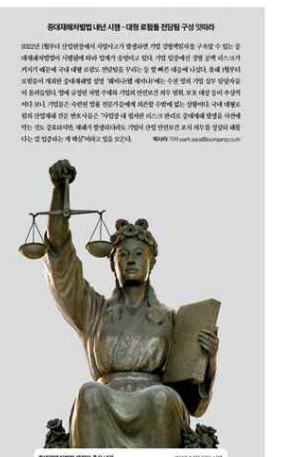
## 중대재해 TF 구성, 전문가 영입... 선제 대응 나선 로펌들



김연장, 국내 로펌 최대규모 '기업 준법·윤리경영' 파트너

김연장, 국내 로펌 최대규모 '기업 준법·윤리경영' 파트너

중대재해 TF 구성, 전문가 영입... 선제 대응 나선 로펌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된 후의 시대 - 대형 로펌들 전방위 구성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된 후의 시대 - 대형 로펌들 전방위 구성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된 후의 시대 - 대형 로펌들 전방위 구성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된 후의 시대 - 대형 로펌들 전방위 구성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폭증한 기업 자문 수요에 선제적 대응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폭증한 기업 자문 수요에 선제적 대응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폭증한 기업 자문 수요에 선제적 대응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폭증한 기업 자문 수요에 선제적 대응

• 파이낸셜뉴스

- 박 변호사는 “선제적·적극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동시에 법적 측면에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에 대한 조치 및 내역 근거 마련, **사고 발생 시 기업의 대응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 과거 직업환경의, 산재소송 변호사로서 피해자들의 입장에 섰다면 로펌에서의 역할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의사 경력을 살려 웰스케이어, ESG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특히) 산재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사전 대응 체계 마련 상담과 지원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앙일보

- 처벌에 초점을 맞춰 산업안전 문제를 다루다 보니 법무법인만 살피운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중대재해센터’를 발족했다. **을 초까지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을 역임했던 박영만 변호사까지 가세해 30명 정도로 꾸려졌다.** 국내 대형 로펌치고 산재팀을 꾸리지 않은 곳이 없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제정된 뒤 **산업안전이 로펌 입장에서 돈이 되는 분야라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각 기업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로펌을 찾는 목적은 딱 하나다.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다. 산업안전이 예방보다 면피로 흐르고 있는 셈이다.**

파이낸셜뉴스

사회

≡ Q 경제 정치 사회 IT 국제 라이프

[화제의 법조인]산재사고 전문, 의사 출신 박영만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4 14:49 수정 2021.05.04 16:50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법 도입 맞춰 산재 전문가로 영입  
직업환경의-변호사-고용부·최초 외부 특채 산재정책국장 거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율촌 박영만 변호사. 박영만 변호사는 의사출신이다. 그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기업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도입으로 기업 최고 경영자의 안전사고 책임이 강화됐다. 산업현장 사망사고는 후속 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 대응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 차운을 통해 기업들이 산재 사고 사전 예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법무법인 화우, 고재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영입... 중대재해법 대응

김민우 기자

입력 2021.07.19 14:07

- 고 고문은 “현장의 여러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시스템적 접근이라는 면에서 법규에 의한 **일괄적인 규제로만으로는 완벽한 예방이 어렵다**”며 “대한민국 산업안전이 국격에 맞는 수준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고예방을 위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대형생산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에 맞는 자율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화우는 지난해 노동과 형사, 건설 및 기업자문 분야 등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TF를 발족하고, 국내 로펌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을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고재철 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법무법인 화우 제공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고재철 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및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대비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바빠지는 가운데, 산업 안전 현장의 전문가를 영입해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다.

고 고문은 1980년대 건설현장에서부터 산업 안전을 위해 직접 발로 뛰 전문가로, 35년 가까이 산업안전 분야에 매진해 왔다. 한양대 토목공학과 석사를 졸업했으며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안전문화홍보실장, 본부 건설안전실장, 대전지역본부장 등을 지내다가 지난해 12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했다.

고 고문은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 홍보실장으로 임하며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인식 전환 캠페인인 ‘조심조심 코리아’를 행정안전부와 함께 시행해 안전의 문화화를 통한 사회의 인식개선에 힘썼다.



## 과제

- 이번 시행령은 과연 누가 만든 것인가?
  - 노동부는 시행령에 아주 제한적인 질병목록 정해놓고, 비논리적인 설명으로 일관
- 과제
  - 급성중독에 준하는 목록화 제대로
  - 연구진이 제시한 5가지 기준을 반영한 목록화 추가 필요
    - ①업무와 인과관계 파악가능, ②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가 산안법 등에 명시,
    - ③법상 의무 이행으로 사업주의 질병예방가능, ④질병으로 인한 신체 피해의 심각성,
    - ⑤사회적 관심이 높은 중대질병
  - 질병목록에 나열된 질병 이외에의 질병도 포괄할 수 있는 내용 반드시 필요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고, 인과관계(책임), 예방가능, 중대함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질병일 경우 중대재해처벌대상 직업성 질병으로 본다.

토론 1. 김재운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상 경영책임자의 의무 범위**  
-시행령 제정안 제4조, 제5조에 관한 비판적 검토-  
**<토론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운** 교수

**Contents**

- 1. 논의의 전제
- 2. 개별 쟁점에 대한 의견
- 3. 결론

## 1. 논의의 전제

### (1) 죄형법정주의

#### ▷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함

-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 “위험을 만드는 주체가 누구든 그 위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Those responsible for creating the risk must take ownership of it)”는 원칙 실현

#### ▷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명확성의 원칙’을 필요로 함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제6조):
  -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임의적 병과)
  - 사망 외 중대산업재해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인 (제7조):
  -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10억원 이하 벌금

☞ 경영책임자등과 관련한 각종 의무규정을 시행령에 규정할 때 포괄적 규정, 예시적 규정 등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위임범위 내에서 의무내용을 구성요건에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

## 1. 논의의 전제

### (2) 법 제4조상 경영책임자등의 책임과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성격

#### ▷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구별되는 독자적·창설적 의무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책임은 고의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작위범 또는 부작위범 형태로 위반하고 이를 통해 중한 결과로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진정결과적가중범’임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무를 ‘고의작위범’(예컨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련된 미비 사항을 경영책임자등이 이사회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정하지 않을 것을 직접 지시한 경우 등) 또는 ‘고의부작위범’(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구축하지 않은 경우 혹은 서류상 구축하였으나 실질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처벌하는 독자적 의무를 규정한 것임

- 이러한 새로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의 신설을 통해 그 동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인사업주 또는 개인사업주, 직접행위자(현장소장 등)만을 처벌하고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지 못하는 처벌공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임

☞ 요컨대 종래 산안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개인사업주, 법인, 직접행위자 등은 산안법의 벌칙규정에 따라 형사처벌되고, 새롭게 창설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의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라 단순한 ‘업무상과실범’이 아닌 ‘진정결과적가중범’으로서 형사처벌되는 것임



## 2. 개별 쟁점에 대한 의견

### (1) 시행령 제정안에서 인용범위 및 시행령 제정안 제4조 제1호, 제4호 관련

#### ▷ 발표자 의견

- 법률에서 명시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부분을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 그럼으로써 마치 법률 조항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에 관한 조항인 것처럼 왜곡
- 전반적인 인적/물적 조치가 아닌, 단지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와 관련된 조치만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음

#### ▷ 토론자 의견

-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 그 내용을 규정할 수 없음. 법률에서 명시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을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이 아니라, 이미 법률에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의 내용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
- 시행령 제정안 제4조 제1호 또는 제4호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편성 등” 또는 “재해예방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봄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들에게 부과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와 관련된 의무가 아닌 **독자적인 의무**로 이해해야 함

## 2. 개별 쟁점에 대한 의견

### (2) 시행령 제정안 제4조 제2호 관련

#### ▷ 발표자 의견

- 재판에서 경영책임자들이 제2호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라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는지 여부만을 따지게 될 위험이 있음. **그러므로 시행령 제정안 제2호 중에서 괄호 안의 내용만큼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 ▷ 토론자 의견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시행령 제정안 제4조 제2호에서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업무장소 및 작업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개선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마련과 이행상황 점검을 의무내용으로 하고 있음
-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개선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마련은 산안법 제36조의 위험평가의 실시와 일정부분 중복되는 내용으로 사업주에게 이중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산안법 제36조위반의 경우 산안법상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중대) 산업재해의 사전예방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 2. 개별 쟁점에 대한 의견

- 따라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따라서는 현행 산안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성평가의 실시'로 갈음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마련해 둬으로써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며, 중대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특히,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있어서는 이종의 의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의무준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재판에서 경영책임자들이 산안법 제36조상의 위험성평가의 실시로 시행령 제정안 제4조 제2호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항변하더라도 재판부는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나마 실시했는지 아니라, 그 내용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점검·개선"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마련과 이행상황 점검"을 실질적으로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함

## 2. 개별 쟁점에 대한 의견

### (3) 시행령 제정안 제4조 제3호 관련

#### ▷ 발표자 의견

- 제3호는 내용자체만 놓고 보면 틀린 것은 없지만, 형벌조항임을 감안한다면, 산안법상 사업주가 당연히 배치해야 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그 자체로 면죄부를 줄 위험이 큰 조항이다.

#### ▷ 토론자 의견

- 산안법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5조), 관리감독자(제16조), 안전관리자(제17조), 보건관리자(제18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19조), 산업보건의(제2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62조) 등이 있음

- 제3호는 사업주로 하여금 산안법상 요구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을 정해진 수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가목), 300명 미만 사업장 등 겸직이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업무시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나목)

- 특히 제3호는 "전문인력의 배치" 뿐만 아니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발표자의 의견과 같이 경영책임자들이 단지 전문인력을 배치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면죄부를 받을 수 없고, 전문인력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였는지 여부(예컨대 업무시간의 충분한 보장, 실질적 업무수행 등)가 처벌의 핵심요건이 될 것임

## 2. 개별 쟁점에 대한 의견

### (4) 시행령 제정안 제4조 제8호 관련

#### ▷ 발표자 의견

- 도급인 등이 제8호 가, 나목의 의무를 하기만 하면,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해당 내용은 이미 산안법에도 있지만 현장에서 적용이 잘 안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차라리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 ▷ 토론자 의견

- 발표자의 의견처럼 제8호를 삭제할 경우 도급인의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 즉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그에 따라 시행령 제정안 제4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5조의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하여야 함

- 그러나 사업주의 업무범위와 도급인의 업무범위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의무의 내용도 상이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산안법에서도 사업주에게는 안전조치의무(제38조), 보건조치의무(제39조)를, 도급인에게는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제63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제64조)를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도급인의 경우 수급업체가 안전보건에 관한 충분한 역량(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제8호 가목), 도급인이 수급업체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을 전가하지 않고 적절한 안전보건 비용을 직접부담하고 충분한 수행기간을 담보하였는지(제8호 나목)가 도급인이 부담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핵심내용이라고 이해됨

## 2. 개별 쟁점에 대한 의견

### (5) 시행령 제정안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관련

#### ▷ 발표자 의견

- '법령상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무를 '점검 보고 사항 중 미 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의무로 그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이는 **수권법률의 수권범위를 명백하게 왜곡한 것으로 위법하다.**

-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을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법령상의 의무이행에 대한 면책 조항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제1호 제2문에서 "위탁"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부분은 삭제가 필요하다.**

#### ▷ 토론자 의견

-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하나인 명확성의 원칙은 '구성요건의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음

- 시행령 제정안 제5조 제1항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이라고 개념의 명확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령을 말하는 것인지는 여전히 모호함

• 이는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법인 산안법을 포함하여 산안법 이외의 법령 가운데 안전보건과 관련된 일체의 법령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임

-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산안법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전제로 하지만 이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무임을 고려하고, 안전 관련 개별법을 62개, 보건(보건안전) 관련 개별법을 21개를 모두 [별표]로 적시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입법기술이라고 판단됨(개별법률은 <별첨1> 참조)



## 2. 개별 쟁점에 대한 의견

- 시행령 제정안 제5조 제1항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발표자의 견해와 같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모든 관리상 조치**"로 이해하고 그 구체적 의무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됨

- 이 때문에 수권법률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2항에서도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음. 따라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명확히 규정한 것을 두고 "그 범위를 축소"한 것이라거나 "수권법률의 수권범위를 명백하게 왜곡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평가에 동의하기 어려움

- **의무이행 점검의 "위탁"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은 중형주의 형벌정책에 근거하여 산안법 제167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보다 형벌이 중하다는 점, 중한 형벌을 예정하고 있음에도 법이나 시행령 제정안에서 그 의무내용이 다소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점,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점, 의무이행 점검을 자제 점검만으로 하였을 경우 형식적인 점검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점, 점검을 공신력 있는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제3의 기관(안전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에 위탁했을 경우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 발표자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위탁기관이 사업주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부실한 점검보고서를 제출했을 경우 기관지정취소 또는 경영책임자등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공동정범(혹은 방조범)으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설득력이 약하다고 봄

## 3. 결론

### ●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

▷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수단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 ● 시행령의 제정 범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제정 범위는 수권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법 제4조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담는 것으로, 그에 따라 의무내용이 구체화되었는지 여부에 논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 중대재해처벌법은 규제가 아닌 안전 관련 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

- ▷ '준법경영'을 넘어 '**안전경영**'으로
- ▷ 안전보건 관련 지출은 '**비용**'이 아닌 '**투자**'
- ▷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은 '**처벌**'이 아닌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안전 스크린 도어**'

[별첨1]

<표 1> 안전 관련 개별 법률

번호	법률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소관부처
1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2014. 11. 19.	제12843호	2015. 1. 1.	해양수산부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2020. 2. 4.	제16935호	2020. 8. 5.	산업통상자원부
3	광산안전법	2017. 12. 12.	제15175호	2018. 6. 13.	산업통상자원부
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9. 12. 3.	제16678호	2020. 12. 4.	교육부
5	교통안전법	2020. 6. 9.	제17445호	2021. 1. 1.	국토교통부
6	국가안전보장회의법	2014. 1. 10.	제12224호	2014. 1. 10.	국가안보실
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020. 6. 9.	제17466호	2020. 6. 9.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8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2020. 1. 29.	제16878호	2020. 1. 29.	행정안전부
9	국토안전관리원법	2020. 6. 9.	제17447호	2020. 12. 10.	국토교통부
10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2019. 4. 23.	제16353호	2019. 10. 24.	국방부, 방위사업청
11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020. 12. 8.	제17618호	2020. 12. 8.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1. 1. 12.	제17894호	2021. 1. 12.	소방청
1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2020. 12. 22.	제17689호	2021. 1. 1.	행정안전부
1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0. 12. 22.	제17689호	2021. 1. 1.	경찰청
15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2020. 12. 22.	제17751호	2020. 12. 22.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16	산업안전보건법	2020. 5. 26.	제17326호	2021. 1. 16.	고용노동부
1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20. 8. 11.	제17472호	2020. 9. 12.	보건복지부
1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020. 6. 9.	제17347호	2020. 6. 9.	원자력안전위원회
1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0. 5. 26.	제17326호	2021. 1. 1.	환경부
20	석면안전관리법	2019. 11. 26.	제16606호	2020. 5. 27.	환경부
21	선박안전법	2020. 2. 18.	제17028호	2020. 8. 19.	해양수산부
2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0. 6. 9.	제17375호	2020. 12. 10.	행정안전부
23	송유관 안전관리법	2020. 1. 29.	제16902호	2020. 7. 30.	산업통상자원부
24	수상레저안전법	2021. 1. 5.	제17876호	2021. 1. 5.	해양경찰청
2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0. 2. 4.	제16942호	2021. 2. 5.	산업통상자원부



2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20. 12. 22.	제17653호	2021. 1. 1.	식품의약품 안전처
27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2017. 7. 26.	제14839호	2017. 7. 26.	해양수산부
28	승강기 안전관리법	2021. 1. 12.	제17894호	2021. 1. 12.	행정안전부
2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0. 6. 9.	제17447호	2020. 12. 10.	국토교통부
30	식품안전기본법	2020. 2. 18.	제17037호	2021. 2. 19.	식품의약품 안전처
31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2018. 12. 11.	제15941호	2019. 6. 12.	식품의약품 안전처
3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020. 2. 4.	제16943호	2020. 8. 5.	산업통상자원부
3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020. 12. 22.	제17695호	2020. 12. 22.	행정안전부
3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020. 4. 7.	제17247호	2020. 4. 7.	식품의약품 안전처
35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0. 5. 26.	제17312호	2020. 11. 27.	행정안전부
3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2016. 1. 27.	제13859호	2017. 1. 28.	산업통상자원부
37	어선안전조업법	2019. 8. 27.	제16569호	2020. 8. 28.	해양수산부
3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020. 6. 9.	제17350호	2020. 12.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9	원자력안전법	2020. 6. 9.	제17359호	2020. 6. 9.	원자력안전위원회
4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9. 8. 27.	제16576호	2019. 8. 27.	원자력안전위원회
41	위험물안전관리법	2021. 1. 12.	제17894호	2021. 1. 12.	소방청
4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8. 12. 11.	제15898호	2019. 12. 12.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20. 8. 18.	제17479호	2020. 12. 10.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44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2019. 12. 10.	제16773호	2020. 12. 11.	행정안전부
45	전기안전관리법	2020. 3. 31.	제17171호	2021. 4. 1.	산업통상자원부
4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017. 12. 30.	제15338호	2018. 7. 1.	산업통상자원부
47	제품안전기본법	2019. 12. 10.	제16803호	2020. 6. 11.	산업통상자원부
4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0. 6. 9.	제17456호	2020. 12. 10.	국토교통부
49	철도안전법	2020. 12. 22.	제17746호	2020. 12. 22.	국토교통부
5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0. 8. 11.	제17472호	2020. 9. 12.	식품의약품 안전처, 보건복지부
5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0. 12. 22.	제17689호	2021. 1. 1.	경찰청
5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9. 12. 3.	제16678호	2020. 12. 4.	교육부
53	한국교통안전공단법	2017. 10. 24.	제14939호	2018. 1. 1.	국토교통부
5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2016. 12. 27.	제14502호	2016. 12. 27.	고용노동부

5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6. 2. 3.	제14026호	2017. 2. 4.	식품의약품안전처
5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2020. 6. 9.	제17467호	2020. 12. 10.	원자력안전위원회
57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2018. 12. 31.	제16160호	2019. 7. 1.	해양수산부
58	항공안전기술원법	2020. 12. 15.	제17646호	2021. 1. 1.	국토교통부
59	항공안전법	2020. 6. 9.	제17463호	2020. 12. 10.	국토교통부
60	해사안전법	2019. 8. 27.	제16568호	2020. 8. 28.	해양수산부
6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0. 2. 18.	제17007호	2021. 1. 1.	소방청
62	환자안전법	2020. 1. 29.	제16893호	2021. 1. 30.	보건복지부

<표 2> 보건(보건안전) 관련 개별 법률

번호	법률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소관부처
1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2020. 12. 22.	제17687호	2021. 1. 1.	경찰청, 해양경찰청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2019. 12. 3.	제16727호	2020. 6. 4.	보건복지부
3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2012. 10. 22.	제11509호	2012. 10. 22.	보건복지부
4	구강보건법	2020. 8. 11.	제17472호	2020. 9. 12.	보건복지부
5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2020. 8. 11.	제17472호	2020. 9. 12.	국방부
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2016. 5. 29.	제14183호	2016. 11. 30.	보건복지부
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2018. 12. 11.	제15882호	2019. 3. 12.	보건복지부
8	모자보건법	2020. 2. 18.	제17007호	2021. 1. 1.	보건복지부
9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0. 12. 29.	제17761호	2021. 1. 1.	법무부
10	보건의료기본법	2020. 8. 11.	제17472호	2020. 9. 12.	보건복지부
1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2018. 1. 16.	제15344호	2018. 4. 17.	보건복지부
1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2020. 12. 29.	제17780호	2020. 12. 29.	보건복지부
13	보건환경연구원법	2020. 8. 11.	제17472호	2020. 9. 12.	질병관리청
1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2019. 12. 10.	제16768호	2020. 4. 1.	소방청
15	지역보건법	2019. 12. 3.	제16731호	2020. 6. 4.	보건복지부
16	학교보건법	2020. 10. 20.	제17497호	2020. 10. 20.	교육부
1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2019. 1. 15.	제16264호	2019. 1. 15.	보건복지부
18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2017. 10. 31.	제15022호	2018. 11. 1.	보건복지부
19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2017. 9. 19.	제14898호	2017. 9. 19.	보건복지부
2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2017. 10. 31.	제15022호	2018. 11. 1.	보건복지부
21	환경보건법	2020. 2. 18.	제17007호	2021. 1. 1.	환경부

## 토론 2. 김형렬 교수 가톨릭대 직업환경의학교실

### 노동부 시행령안 검토 - 직업병 목록 관련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형렬

#### 1.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직업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

##### 1) 이 법의 대상이 되는 직업병을 제한할 필요가 없었음.

- 형사법적 처벌이 가능할 만큼 중대하고, 사업주 과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노력을 통해 예방 가능한 직업병인데, 4조에 의해 판단 받기도 전에 대상에서도 포함되지 못한 직업병이 있다면, 이를 이 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문제가 있음. 직업성암, 뇌혈관심장질환 등
- 동일한 질병인데, 사망에 이르면 이 법의 대상이 되고, 사망하지 않고, 중증의 상태로 있으면 이 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문제임 (직업성폐암으로 사망하거나, 사망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이 법을 통한 예방의 지점과 관련이 없는 의학적인 치료 성과의 문제임)
- 중대성만을 대상 질병 선정의 기준으로만 하여도 되는 문제였음. 이후 4조에 의한 판단으로 남겨두면 되는 문제임.
- 근로기준법의 주 52시간 상한을 위반하여 장시간 노동을 방치 혹은 강제하였고, 이로 인해 뇌혈관 심장질환이 발병 혹은 촉발하였다면 이는 이 법의 처벌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시행령은 1) 이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2) 4조의 안전보건관련법에 근로기준법이 관련 법이라고 명확히 해석할 수 있어야 적용 가능함.
-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상 질병을 제한하지 않는 것과 4조 관련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 2) 이 법에서 제한을 두려고 한 이유와 현실적 효과

- 질병이 중하고, 법적 규제와 예방이 가능하고, 인과성 판단을 비교적 명확히 할 수 있는 사고, 급성중독을 이 법의 주요한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의견
- 직업병 중 빈도에서 근골격계질환, 뇌혈관심장질환, 직업성암 등이 상위 빈도에 해당됨. 이들 질환 중 (직업병으로 인정된 질환) 다수는 형사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인과성을 명확히 하기 어려움. 그럼에도 모든 직업병을 이 법의 대상으로 할 경우, 다수를 차지하는 이들 질병이 중대재해법의 주요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상대적으로 사고, 급성중독 등의 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이들 질병에 대해 예방의 관점을 찾아내고, 사업주 처벌과 예방적 조치를 하자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을 통해 모든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만큼 산안법의 역할과 이를 통한 해결, 중대재해처벌법 통한 가중, 예방적 효과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적 적용이 안되니,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서라도 처벌하고, 예방의 효과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현실적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고, 이를 통해 산안법 개정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 할 수 없으니, 예방을 위한 산안법의 실효성 있는 적용을 위한 노력이 주된 주장이어야 함.
- 직업병으로 승인 되는 것과 인과성 판단은 다름.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엄격한 원인주의

방향이 점차 완화되고, 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현실적 피해를 폭넓게 인정하여 재해 이전 시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그동안 이러한 논리로 지속적으로 근골격계질환, 뇌혈관심장질환, 직업성암의 엄격한 인정기준을 완화하기위한 노력을 해왔음. 이러한 맥락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된 직업병을 중대재해 대상 질병으로 가져 갈 경우, 엄격한 형사법적 적용의 대상인 이 법의 대상 질병과 인정기준 완화에 근거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직업병간의 불일치가 존재.

- 사고와 급성중독에 준하는 인과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질병으로 한정하는 것이 법의 집중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

**2. 제한이 필요하다면 그 기준과 근거는?**

○ 제한이 필요할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5가지 기준 제시)

**<표 > 중대재해처벌대상 직업성 질병을 정하는데 있어 고려한 5가지 기준**

기준	내용
1) 업무와 인과관계 파악 가능	- 유해요인 노출과 질병발생간에 잠복기가 짧은 경우 - 단일요인으로 초래된 질병이 아니거나, 잠복기가 긴 질병이라도 원인의 정량적 평가가 가능해 유해요인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2)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가 산안법 등에 명시	-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산안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3) 법상 의무 이행으로 사업주의 질병 예방 가능	- 산안법 등에 명시된 조치 의무 이행으로 질병 예방이 가능한 경우
4) 질병으로 인한 신체 피해의 심각성	-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경우
5) 사회적 관심이 높은 중대질병	- 1)~4) 조건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사회적 관심이 높아 사업주 처벌을 통해 질병 예방이 필요한 경우

**3. 노동부 시행령안 검토와 입법 현실화 방안**

**1) 직업병 제한을 두지 않기**

- 아직도 현실적인 방안은 중증도(동일요인, 1년 3명 이상)만 규정하고, 별도의 질병을 제한하지 않는 것임. 중대시민재해와 동일하게 별도의 목록을 두지 않고, 4조의 법률위반과 이로 인한 인과성 판단의 문제로 남겨놓고, 형법적 판단 (인과성, 예방가능성, 중대성, 법률근거)에 맡기기.
- 제한을 두는 순간, 대상 질병이 곧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님에도, 배제된 질병에 대한 각각의 논리가 불필요 쟁점을 낳게 됨.
- 근골격계질환 등은 몇몇 사례가 축적되면, 신청 빈도는 줄어들 수 있음. 근골격계질환은 예방



가능한 질환이고, 인과성 판단도 가능하지만, 사업주 노력에 있더라도 발생가능하며, 발생을 줄이는 것보다 중증도를 낮추고, 재발을 막는 것이 주요한 목표여서, 중대재해법의 발생 중심의 판단과는 맞지 않는 질병임.

- 4조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임

## 2) 현재 노동부안 중심의 수정

- 직업병에 대해서도 산안법 실효적 적용 촉구
- 급성질환 중 일부 누락 추가
- 급성질환 중 포괄적 규정 추가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고, 인과관계(책임), 예방가능, 중대함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질병일 경우 중대재해처벌대상 직업성 질병으로 본다.

## 3) 4조, 5조의 내용을 충실히 하기

- 사고나 중독 조차 인과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인과 추정이 가능한 방안 만들기
-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산안법처럼 되지 않기, 혹은 산안법의 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4) 산안법 제대로 만들기

-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안법을 대체할 수 있는 법이 아님.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산안법의 변화를 촉발하는 역할을 해야 함.
- 사업주 예방 노력의 구체적 제시, 원청 책임 실질적 강화, 직업병 분야 예방 의무화, 근로기준과 연계되는 문제까지 통합적 관리 방안 제시

## 5) 직업병 산재보상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필요

- 사회보험 성격의 산재보험의 인정기준은 엄격한 원인주의를 취할 수 없음. 사회적 보장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예방적 보장의 입장을 취함.
- 직업성 암, 근골격계질환 등은 엄격한 원인주의, 인과주의 방향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 (더 확대되어야 함). 산재 승인 질병이 곧 형법적 인과성을 반영하는 것은 아님.
- 중대재해처벌법 특성상, 대상이 되는 질병이라는 것만으로 부담을 갖게 되고, 이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힘이 작동될 수 있음.
- 산재보상과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다를 수 있음을 사회적으로 설득할 필요 있음.

### 토론 3. 이병훈 교수 중앙대 사회학과

#### 토론문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 본인은 산업안전에 관해 문외한이라 두분의 발제문에 대한 전문적인 토론 의견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솔직히 밝혀두며, 30 여년 노동사회학을 공부해온 연구자의 입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에 비켜서 안전불감의 노동현실과 관련된 몇가지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음.
-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에 많은 문제들을 찾아볼 수 있으나, 그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산업재해(사고와 질병 포함)의 문제 심각성이 가장 중차대하다고 진단해볼 수 있으며, OECD 산재치명률 최상위의 ‘산재공화국’이라는 부끄러운 문제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개선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 실효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임.
- 아래 표에서 보여주듯이, 최근 수년동안에도 재해자수와 특히 산재 사망자수(사고사망자수 포함)가 줄어들지 않고 증대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음. 문재인 정부에 의해 산재제도 적용의 강화(예: 추정의 원칙 도입,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등)와 확대, 그리고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 및 시행 등에도 불구하고 산재사고(중대재해 포함)의 발생추이는 그리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재해자수	91,824	90,909	90,129	90,656	89,848	102,305	109,242	108,379
재해율(%)	0.59	0.53	0.50	0.49	0.48	0.53	0.58	0.57
사망자수	1,929	1,850	1,810	1,777	1,957	2,142	2,020	2,062
사망만인율	1.25	1.08	1.01	0.96	1.05	1.12	1.08	1.09
사고사망자수	1,090	992	955	969	964	971	855	882
사고사망만인율	0.71	0.58	0.53	0.53	0.52	0.51	0.46	0.46

- 이처럼 산재 사망자 수가 2천명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얽여 구조화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을 텐데,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초에 시행됨에 따라 과연 중대산재의 희생자수가 얼마나 감소시켜 줄지 자못 궁금하고, 특히 안전불감의 구조적 산업현장관행이 고쳐지지 않을 경우 그 정책효과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도 함.
- 어렵사리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령의 미비점을 따져 보정하려는 전문가들의 발제-토론에 더하여, 중대재해의 실효적 감축을 위해서 다음의 추가적인 정책과제를 제언드리고자 함:

첫째) 안전작업의 필요인력 및 적정 공정/기 보장(과로사 방지와 위험공정에의 2인1조 보장 등)을 무시하는 위험의 외주화 만연과 ‘단가 후려치기’의 불법적 건설 하도급 등과 같이 중대산재 사고빈발의 (산업)구조적 문제를 혁파하기 위한 근본적인 적폐개혁의 대책이 필요하며,

둘째) 취업활동의 다변화를 통해 부쩍 늘어나고 있는 특고·프리랜서·플랫폼노동의 안전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 종속적 계약자의 노동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진짜 사장님’의 사용자성을 판정하고 필요 지원역할을 부과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필요 있으며,

셋째)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정에서부터 큰 논란을 빚어 왔듯이) 노동법 보호의 보편성을 실현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체의 배제와 50인 미만 사업체의 유예를 마땅히 폐기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임.

넷째)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적 예방효과를 거두지 못한 배경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산업안전 감독행정의 미비와 산재소송에서의 미온적 사법판정(검찰의 소극대응 및 재판과정에서의 엄격 양형기준 적용 어려움 등)에 대해 관련 제도와 집행체계의 개선이 실질적으로 강구될 필요 있음.

- 바라건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이 그들의 영리활동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모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노동현장의 새로운 풍토가 열림과 동시에 그동안 산재사고 빈발의 구조적 문제원인으로 지적되어 고질적인 노동시장 적폐관행에 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만 노동안전의 선진화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을 주도해온 정 부여당에서 중대재해의 실효적 감축과 궁극적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행정 집행력 강화를 책임지고 추진해주길 당부 드림.